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 규정

2023년 5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참여·소통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 의사소통과 갈등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투명한 대학 운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의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관련 있는 교계,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원 참여·소통 운영위원회)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 활동 관련하여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또한 본 대학에서 시행 하는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방법) 본 대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견을 수렴한다.

1.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2. 대학 홈페이지 Q&A, 오프라인 건의함 등 의견제기 창구를 마련하여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3. 각 부서와 부속기관의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제6조(운영 및 처리 절차) 본 대학교는 구성원 참여·소통과 관련하여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구성원 의견수렴
2.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관련 ‘구성원 대학 활동 참여·소통 위원회’ 회의
3.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시행
4.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결과 보고
5. 구성원의 제안 사항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환류)

1.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이나 프로그램 시행 성과 평가를 실시 할 때 의견수렴의 결과를 적용하여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위원회 정한다.